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386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3 |
| 1. 농사용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윤준병의원안) ..... | 3 |



## I. 개요

### 1.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386호)

####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5. 7.
- (3) 회 부 일 : 2025. 5. 8.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사용 전력 제도는 영세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2년 처음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최근 정부는 모든 계약종별 전력량요금을 인상하여 영세 농어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고, 특히 농사용 전력의 전력량요금이 144% 상승하여 여타 전력량요금의 인상률보다 높아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농사용 전력의 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을 더한 뒤 10%의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금액으로 청구되는데, 전기와 마찬가지로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인 수돗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일괄적으로 면제되는 반면 전기에 대하여는 어떠한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전력 사용자 중 특별히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큰 농사용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 농어민의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고 농어가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

## II. 주요 내용별 검토

### 1. 농사용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윤준병의원안)

| 현 행                                                                       | 개 정 안                                                                                                                                    |
|---------------------------------------------------------------------------|------------------------------------------------------------------------------------------------------------------------------------------|
| <input type="checkbox"/>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26조)<br><u>&lt;신 설&gt;</u> | <input type="checkbox"/> 농사용 전력의 공급을 면세 대상에 추가<br>○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공급약관에 따라 공급되는 농사용 전력<br><input type="checkbox"/> 부 칙<br>○ 시행일: 공포 후 1년 |

\* 윤준병의원안 2025. 5. 7. 발의(의안번호 10386)

☐ 개정안은 농사용 전력의 부가가치세 면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 농어민의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고 농어가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전기요금은 기본요금<sup>1)</sup>, 전력량요금<sup>2)</sup>(기준연료비 및 기타 총괄원가),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sup>3)</sup>으로 구성되며, 전기 공급 방식(고압, 저압)과 계약 종류(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용)에 따라 단가가 상이한 구조임.

1) 기본요금은 변전소, 송·배전선로 등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쓰이는 비용을 반영한 요금으로 고객에게 안전하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한전이 갖추어야 할 설비 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에 차등이 생기게 됨.

2) 전력량요금은 연료비 등 사용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한 요금으로 사용량이 적으면 전력량요금이 낮고, 사용량이 많으면 전력량요금이 높아지게 됨. 기본요금은 설비용량(단위:kW)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전력량요금은 일정 시간동안 사용한 에너지의 양인 사용량(kWh)을 기준으로 산정됨.(주택용은 예외로 사용량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산정)

3) 기후환경요금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요금이며,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되도록 한 요금임.

### [전기요금의 구성과 체계]

$$\text{전기요금} = \text{기본요금} + \text{전력량요금 (기준연료비 + 기타총괄원가)} + \text{기후환경요금} \pm \text{연료비조정요금}$$

그리고, 농사용 전기는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 및 수문조작, 농사용 육묘 및 전조 재배, 농작물 재배·축산·양잠·수산물 양식업 등에 사용되는 용도로, 농어업인 보호를 위해 다른 용도별 전기요금보다 요금단가가 낮고, 계절별로도 차등 적용되고 있음.

### [2024년 용도별 전기요금 단가]

| 계약종별       | 고객수<br>(천호)  | 판매량<br>(백만kWh) | 판매수입<br>(억원)  | 판매단가<br>(원/kWh) |
|------------|--------------|----------------|---------------|-----------------|
| 주택용        | 15,988       | 86,989         | 136,499       | 156.91          |
| 일반용        | 3,592        | 134,807        | 233,207       | 172.99          |
| 교육용        | 21           | 9,433          | 13,489        | 143.00          |
| 산업용        | 439          | 286,212        | 481,330       | 168.17          |
| <b>농사용</b> | <b>2,192</b> | <b>21,088</b>  | <b>17,318</b> | <b>82.12</b>    |
| 가로등        | 2,431        | 3,402          | 5,405         | 158.90          |
| 심야         | 658          | 7,890          | 8,546         | 108.31          |
| 총 계        | 25,321       | 549,821        | 895,794       | 162.92          |

###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 구분 |              | 기본요금(원/호) | 전력량요금(원/kWh)      |      |
|----|--------------|-----------|-------------------|------|
| 갑  |              | 360       | 40.3              |      |
| 을  | 저압           | 1,150     | 57.9              |      |
|    | 고압<br>(A, B) | 1,210     | 여름철(6~8월)         | 60.6 |
|    |              |           | 봄·가을철(3~5, 9~10월) | 58.6 |
|    |              |           | 겨울철(11~2월)        | 60.6 |

주 1.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2. 갑: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하는 전력

을: 농사용 육묘, 전조재배, 농작물 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 등에 사용하는 전력

3. 고압A: 표준전압 3,300V~66,000V, 고압B: 154,000V

자료: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 현행법은 최종소비자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조세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를 두어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수돗물, 연탄, 여객운송 용역, 성형수술 등을 제외한 의료·보건용역, 교육·문화·종교 관련 재화와 용역 등에 대한 면세를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최근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농어업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치솟는 물가상승과 국제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져 농업인의 에너지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에너지가격 인상으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농사용 전기를 포함하여 농업인들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비료 등 각종 원자재비용의 상승으로 농·어가의 어려운 상황에서 농사용 전기요금의 부가가치세 면제로 영농비용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참고로, 정부는 전기요금의 모든 계약종별 전력량요금을 일률적으로 인상함에 따라 2022년 1월 대비 2025년 4월 기준 산업용전력의 전력량요금이 55.0% 상승한 반면, 농사용전력의 전력량요금은 190.9% 상승한 바 있음.<sup>4)</sup>

---

4) 모든 계약종별 전력량 요금은 정액 정액인상되었으며, 인상액은 2022년 4월 4.9원/kWh, 2022년 10월 7.4원/kWh, 2023년 1월 11.4원/kWh, 2023년 5월 8원/kWh임. 다만, 농사용 전기의 경우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3년 1월 및 5월 인상분은 2023년부터 3년에 걸쳐 3.8원/kWh씩 분할 인상하기로 함.

[산업용전력(갑) I 및 농사용전력 전력량요금 비교]

| 시행일         | 전력량요금(원/kWh)  |             |
|-------------|---------------|-------------|
|             | 산업용전력(갑) I 고압 | 농사용전력(갑) 고압 |
| 2022. 1. 1. | 60.9          | 16.6        |
| 2022. 4. 1. | 65.8          | 21.5        |
| 2022.10. 1. | 73.2          | 28.9        |
| 2023. 1. 1. | 84.6          | 32.7        |
| 2023. 5.16. | 92.6          | 35.4        |
| 2023.11. 9. | 92.6          | 35.4        |
| 2024. 1. 1. | 92.6          | 39.2        |
| 2025. 4. 1. | 94.4          | 48.3        |

주: 산업용전력(갑) I 고압은 봄·가을철 요금 기준임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표(종합) 재구성

둘째, 현제도 수돗물<sup>5)</sup>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전기도 수돗물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기초생활필수품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는 수돗물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기초생활용수로서 공공재적 성격을 갖기 때문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전기도 생활 필수품으로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에너지 자원임.

따라서, 전기와 수돗물 모두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필수재임을 감안할 때, 전기도 수돗물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5)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수돗물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농사용 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더라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이를 가격에 전가하여 실제 전기요금의 인하효과가 낮게 나타날 수 있어,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한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음.

즉, 농업인은 전기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농업인의 실제 비용 절감으로 온전히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큼.<sup>6)</sup>

이로 인해 전기 공급업체나 유통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분이 전기요금 인하로 완전히 반영되지 않고, 일부는 가격에 전가되어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인하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둘째, 현제도 면세품목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하여 과다한 측면이 있어 면세 범위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점임.

2010년 이후에도 치료 이외의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2011년), 자동차운전학원(2012년), 13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관리용역(2014년), 국가가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업과 도·소매업(2018년) 등을 면세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가 있음.

셋째, 현재 농업인에 대해서는 영농비용 절감을 위하여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근거로 다양한 조세정책이 시행

6) 농업인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아닌 면세사업자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임.

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세제지원이 중복·과잉 지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조세정책으로는 「소득세법」에 따른 식량작물재배업 비과세, 10억원 이하의 일반 작물재배업의 수입금액 비과세 및 5천만원 이하의 어로어업 소득 비과세(제12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농·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제66조·제67조·제68조), 자경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69조),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특례(제105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제106조의2)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농업인등에 대한 조세정책]

| 근거          |                      | 내용                                                                                                                                   |
|-------------|----------------------|--------------------------------------------------------------------------------------------------------------------------------------|
| 「소득세법」 제12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량작물재배업 비과세</li> <li>· 10억원 이하 일반 작물재배업의 수입금액 비과세</li> <li>· 5천만원 이하 어로어업 소득 비과세</li> </ul> |
| 「조세특례제한법」   |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 · 영농·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
|             | 제69조                 | · 자경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             | 제105조제1항<br>제106조제2항 | ·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
|             | 제105조의2              | ·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

재정정책으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농어업인의 복지, 보건의료, 교육여건 등을 개선하고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 보전 및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현재도 농사용 전기요금은 주택 등 모든 계약 종류에서 가장 낮으며, 이러한 낮은 가격 때문에 농사용 전기를 농사 외로 전용하는 부정 사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농사용 전력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2026년 215억원 등 2026~2030년까지 5년간 총 1,075억원(연평균 21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 [농사용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 구분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누적     | 연평균  |
|------------------|------|------|------|------|------|--------|------|
| 국세<br>(74.7%)    | -161 | -161 | -161 | -161 | -161 | -803   | -161 |
| 지방소비세<br>(25.3%) | -54  | -54  | -54  | -54  | -54  | -272   | -54  |
| 합계               | -215 | -215 | -215 | -215 | -215 | -1,075 | -215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47